

의안 번호	2412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금) 문희성 의원 외 8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5. 16.(금)

2. 제안설명 요지 (문희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중구 내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 중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안 제7조)
- 점자의 보급과 지원(안 제8조)
-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10조)
- 한글 점자의 날(안 제11조)

다. 근거법규

- 「점자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8조, 제12조의2, 제15조,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큰 거 법 규

점자법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